
지방자치단체 청사보안 개선대책

2012. 11.



행 정 안 전 부
(자 치 행 정 과)

목 차

① 자치단체 청사보안 현황	1
② 문제점	2
③ 개선대책	3
④ 지방자치단체 행정사항	5
※ 참고 1 : 과제별 추진일정	6
참고 2 : 보안업무시행규정요강 발췌	7

지방자치단체 청사보안 개선 대책

1

자치단체 청사보안 현황

□ 자치단체 청사방호는 통일적 기준없이 자율적으로 시행

- 정부중앙청사는 「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(국방부)」에 ‘가’급 중요시설*로 지정된 반면, 자치단체 청사는 대상시설에서 제외

* 중요시설은 군·경의 테러 등 대비 지원계획 수립 및 유사시 지원이 의무화됨

- 자치단체 청사의 경우,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(행안부 훈령)에 최소한의 시설보안 기준*만 제시, 자치단체별 계획을 통해 시설보안을 실시

* 시설보안기준 : 제한구역(통신실, 문서고 등), 통제구역(안보fax실 등) 지정·관리

□ 자치단체 청사는 “개방형 청사” 정책에 따라 대부분 민간에 개방

- 17개 시·도 중 13개 시·도는 근무시간에 일반인의 청사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며, 청사 일부는 시민공간으로 활용 중

- 또한, 14개 시·도는 청사 담장을 없애고 청사주변을 시민공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청사 출입관리에 어려움이 가중

신분증 확인 등 출입통제 (3개 시·도)	방문목적 확인 후 안내 (1개 시·도)	주간 완전 개방 (13개 시·도)
▪ (서울) 시민개방공간 외 일반인 출입통제, 스피드 게이트 운영 및 사무실 출입문 상시 폐쇄, CCTV 264대 운영 ▪ (경기) 출입문 자동 개폐 시스템 활용 통제, 방문증 교부 * 10.14 중앙청사 사건 이후 시행 ▪ (강원) 방문객 통로 일원화, 방문객 방문증 교부	▪ (인천) 방문객 방문목적 확인 후 안내 - 공무원은 전자공무원증 활용 자동출입문 이용	▪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

- 시군구 및 읍면동은 청사 출입보안(신분증 확인 등)이 시행되는 곳이 없음

□ 과도한 “개방형 청사 정책”으로 인해 보안의식 저하

- (공무원) 문서·자료보안, 출·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, 통신실 등 주요 시설 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한 보안의식 저하
- (주민) 자치단체 청사는 지역의 주요 보안시설임에도 “주민의 공간”이라는 점만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

□ 청사개방으로 폭력·절도·불법점거 등 범죄에 취약

- 공무원 대상 폭력, 청사침입 절도사건, 단체장 집무실 점거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
- 이로 인해 행정업무 수행이 차질을 빚게 되고 궁극적으로 일반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

- ▲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폭력, '10.1~'12.4 기간 중 1,409건(1일 약 1.67건)이 발생 되었으며 이중 91%(1,290건)가 청사 내에서 발생
- ▲ 광주광역시, 용역업체 직원이 빗축제('10.1)에 사용된 컴퓨터 절도 후 검거('12.10)
- ▲ 전남도, 농민단체 회원(30여명)들이 쌀직불금 감축 항의로 지사실 점거(3.21)

□ 청사방호 인력 부족 및 사전 대응 매뉴얼 미비

- 청원경찰은 시·도 평균 25명(최소 울산 12명, 최대 서울 55명)이며, 특히 12개 시·도는 30명 미만으로 방호인력 부족 *정부중앙청사 방호원 99명
- 비상시를 대비한 청사방호 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, 불법 집단민원 등 각종 상황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《 기본 방향 》

- ▲ 기존 "자치단체 청사 개방" 기조는 유지하여 주민편익은 최대한 보장하되, 업무(행정)공간구역을 분리하여 보안을 강화
- ▲ 업무공간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인력·예산 등 지원

□ 「자치단체 청사 출입 보안대책」 수립 의무화 근거 마련

- 자치단체 방호계획에 ‘청사 출입관리’ 등의 보안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‘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’을 개정 (‘12.11월중)
 - 시·도 :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구역을 분리하여 출입보안대책 수립
 - 시·군·구 :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청사 출입보안대책 수립

현행	개정 검토안
제45조(자체방호계획 수립 운영) 각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·운영하여야 한다.	제45조(자체방호계획 수립 운영) (현행 본문 조문과 같음) 제45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관리) ① 제45조에 따른 시·도의 자체방호계획에는 청사 출입보안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출입보안대책에는 시·도의 청사를 개방구역(민원실, 주민개방시설 등)과 신분확인 등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을 분리하여 출입보안을 강화하는 사항과 방문객 출입로 제한·방문증 교부·취약지 방호 강화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③제45조에 따른 시·군·구의 자체방호계획에는 시·군·구의 여건에 맞는 청사 출입보안대책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
□ 자치단체 청사 출입보안 강화

- (시·도 본청) 민원실과 개방공간을 제외한 업무(행정)구역은 원칙적으로 출입관리가 필요한 구역으로 설정, 출입관리를 강화 (‘12.11월 중)
 - 시·도 청사배치 등의 여건 상 시민개방공간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*할 경우, 시·도 여건에 맞게 출입관리구역을 설정
- * 민원실 또는 시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등 시민편의시설이 업무구역 안에 있는 경우 등

◀ 시·도 본청 청사 출입관리 요령 ▶

- ▶ 방문객 청사 출입통로 제한 및 안내데스크 운영
- ▶ 방문객 신분확인 후 출입조치 (방문증 배부)
- ▶ 청사출입문, 개방공간과 업무공간 연계통로 등 취약구역에 청원경찰 집중배치
- ▶ 공무원은 신분증 상시 패용

※ 강원도 사례 : ‘강원도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(도지사 훈령)’ 발령(‘12.4), 방문객은 현관으로 출입을 일원화하고 신분확인 후 방문증 교부 (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신분확인)

○ (시·군·구)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청사 출입관리 대책 시행(‘12.11~)

- 안내데스크를 활용, 방문객 방문목적 확인 및 안내 등 최소한의 관리대책을 시행

□ 청사 보안인력 및 시설 보강

- (청원경찰) 자치단체 수요조사(‘12.11월중)를 거쳐 증원규모를 확정하되, 자치단체 청사 필요초소별 1일 3교대 근무 가능수준으로 증원(‘13년 총액인건비 반영)
 - 시군구는 금번 대책에 따라 증원되는 청사경비 인력에 대해서는 ‘13년도 총액인건비 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·운영 가능
- (보안시설) 자치단체 자체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스피드게이트, 출입문 자동개폐시설 및 카드리더기, CCTV 설치 등 추진

□ 대테러 및 불법점거 등 대비 청사방호체계 강화

- 경찰·소방 등 유관기관 등과 청사방호 협의체 구성, 비상시에 대비한 지원·협력체계 구축 (‘12.11월중)
- 청사 외곽 경계인력(청경, 당직순찰 등) 보강 및 CCTV 등 확대 (‘13~)
- 유사시에 대비한 부서별 방호 분담구역 사전 지정, 출입 및 이동로 폐쇄계획 수립 (‘12.11월중)

□ 지방공무원 보안의식 제고

- 보안관리 강화 등 복무기강 확립 추진 (10.15, 기 공문시행)
 - 주요시설(전산실, 통신실, 문서고) 관리 철저, 청사 출입 및 문서보안 강화, 화재예방, 공무원 출·퇴근 및 중식시간 엄수 등
- ‘국가주요기관 보안점검계획(국무총리실, 10.19~10.31)’과 연계하여 각 자치단체 자체 보안점검 실시 (10.17~10.31)
 - 휴일·야간시간 등 취약시간 대 출입통제 실태,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, 화재예방 및 서류보안 관리실태 등
- 자치단체별 자체 직원보안 교육 실시 (‘12.11월까지 완료)

4 자치단체 행정사항

□ 자치단체별 자체 출입보안대책 수립 (‘12.11월중)

- 자치단체별 출입보안 세부 시행계획, 인력·시설보강 계획 수립
 - ※ 보안업무시행규정요강(행안부훈령)은 ‘12.11월초 개정 예정
- 시·도별 관할 시·군·구의 청사보안 강화 대책 수립 유도
- 시·도별 출입보안대책 제출(11.20까지)
 - ※ 11월 시·도부단체장회의 시 토의 및 점검 예정

□ 자치단체 청경 인력보강 (‘12.11~)

- 시·도 및 시·군·구 수요 파악(‘12.11월중, 별도 서식통보)
- 자치단체별 출입보안대책과 연계하여 인력 증원 추진

□ 자치단체별 청사 출입관리 강화 (‘12.12~)

※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, 자치단체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가능

참고

과제별 추진일정

추진 과제	추진 일정	비고
①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추진 - 출.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, 주요시설 관리 철저 등	'12.10~	자치단체
② 청사 출입보안 실태 자체점검	'12.10.31까지	자치단체
③ 자체 보안교육 실시	'12.11.30까지	자치단체
④ 자치단체별 청사 출입관리 개선계획 수립	'12.11	자치단체
⑤ 보안업무시행규정 요강 개정	'12.11	행안부
⑥ 지역단위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테러 및 불법점검 대비 방호체계 구축	'12.11~	자치단체
⑦ 자치단체 청사보안 인력(청경) 보강	'12.12	행안부
⑧ 보안시설 보강	'13~	자치단체